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

서울대학교

수신자 전 기관

(경유)

제목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 인원의 전입신고 안내(보고, 협조)

(TITLE)

---

1. 관련근거: 예비군법 제3조의 2(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등)

2. 위 관련근거에 의해 현재 예비군 편성대상 교직원 중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인원은 빠짐없이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안내 이유: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할 교직원 예비군이 전입신고 미실시 등의 이유로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사례가 있어, 위 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함

나. 신고 대상: 예비군 편성대상 인원으로 본교에 임용(채용)되어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지 않는 자

* 현재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 자

나. 신고 기간: '18년 11월 30일 까지

다. 전입신고 방법

1)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(http://snuyebigun.snu.ac.kr/sub_01/sub0103.html)

2) My SNU로그인 -> 행정정보 -> 마이메뉴 -> 예비군 -> 예비군 인터넷 전입신고

붙임 #1 직장예비군 편성관련 법 규정 1부. 끝.

서 울 대 학 교 총 장

선임주무관 **박영애** 연대장 **안대희** 총무과장 **전결 11/01 김완종**

협조자 행정관 **권수일**

시행 예비군연대-1693 (2018.11.01.) 접수

우 /

전화 전송 /yapark@snu.ac.kr / 공개